# 전기분야 단위 및 수치에 따른 암기법

#### 1. [%]

- ① 공구손료: 3%(직접 노무비의 3%)
- ② **잡재료비** : 2 ~ 5%(주재료비의 2~5%) **최대치 5%**
- ③ **감광률** : 5%(부착높이 20[m]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 농도 하한값이 감광률 5[%/m] 미만인 것으로 한다.)
- ④ **표시등의 수명시험** : 130%(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[%]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, 현저한 광속변화,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.)
- ⑤ 기타: 80%

#### 2. 온도 [℃]

20℃ :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, 정온식 감지기

- ① (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[C]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)
- ② (정온식 감지기는 주방,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, 공칭 **작동온도**가 최고주위온도보다 **20[℃] 이상**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)

#### 3. **각도 [°]**

- ① 5°
  - ③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(검출부는 5°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)
  - ① 불꽃감지기의 시야각(불꽃감지기의 시야각은 5° 간격으로 설정)
- ② 15°
  - □ 위치표시등

(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,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°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[m]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)

□ 표시등의 식별도시험

(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°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[lx]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[m]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.)

③ 45°: 스포트형 감지기

(**스포트형 감지기**는 **45° 이상**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)

#### 4. 두께 [mm]

- ① 공기관의 규격
  - ¬ 두께 : 0.3mm 이상
  - © 외경: 1.9mm 이상
- ② 비상콘센트 풀박스 : 1.6mm 이상(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, 두께 1.6[mm]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)
- ③ 비상전원수전설비 큐비클 외함: 2.3mm 이상(외함은 두께 2.3mm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하며,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)

#### 5. [cm]

- ① 5cm :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 (감지선형 감지기의 **굴곡반경**은 5[cm] 이상으로 할 것)
- ② 10cm :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단자부와 마감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 (단자부와 마감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[cm] 이내로 설치할 것)
- ③ 15cm : 소방용 케이블과 다른 용도의 케이블을 배선전용실에 함께 배선할 경우 이격거리 (소방용 케이블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 전용실 등의 내부에 소방용이 아닌 케이블과 함께 노출 하여 배선할 때 소방용 케이블과 다른 용도의 케이블간의 피복과 피복간의 이격거리는 15[cm] **이상**이어 야 한다.)
- 4) 50cm
  - 축광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높이 (바닥으로부터 높이 50[cm]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)
  - 축광방식 피난유도선의 표시부의 설치간격 (피난유도표시부는 50[cm]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)
  - □ 광워적등방식 피난유도선의 표시부의 설치간격 (피난유도표시부는 50[cm]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[m] 이내로 할 것)

#### 6. 거리 1.5[m]

- ① 감지기 ↔ 공기유입구의 이격거리(이상) (감지기(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)는 실내로의 **공기유입구**로부터 1.5[m] 이상 떨어진 위 치에 설치할 것)
- ② 공기관 ↔ 벽과의 수평거리(이하) (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.5[m] 이하가 되도록 하고,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[m](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[m]) 이하가 되도록 할 것)
- ③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↔고압의 전로와의 이격거리(이상) (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.5[m]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. 다만,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)

## 7. 거리 5[m]

- ① 수평적 경계구역에서 외기 개방시의 기준(차고, 주차장, 창고) (외기 개방시의 기준(차고, 주차장, 창고) :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, 주차장,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kml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)
- ② 비상콘센트를 설치할 경우 계단 및 계단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설치거리 (비상콘센트의 **배치는 아파트** 또는 **바닥면적**이 1,000[m²]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의 출입구(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.) 로부터 5[m] 이내에, 바닥면적 1,000[m²] 이상인 층(아파트를 제외)에 있어서는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(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 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.)로부터 5[m] 이내에 설치하되,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

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 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

- ¬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,000[m²]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[m]
- ① **기타**의 것은 **수평거리 50[m]**)

#### 8. **50[Ω]**

### ①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

 $(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<math>50[\Omega]$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,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[%] 이상 이어야 할 것)

## ②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임피던스

· 분배기,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.)